

「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(고시)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공항 외 지역에서 화주 등이 보안장비·인력 등을 갖추고 화물 보안검색을 완료한 경우, 공항에서 검색을 면제하는 상용화주제를 운영 중('04년~)이나, 현재 2개 업체만 상용화주로 지정받고 운영 중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 의견수렴(2회, 방문·서면)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항공화물 보안트럭 운전자 외 감독자 동승기준 완화(안 제12조제3항)

상용화주 상황실에서 운행 중인 화물트럭 내·외부를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경우, 감독자 동승기준 면제

나.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(안 제5조제4항, 별지3호 서식)

상용화주의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개정 후 관할 지방항공청에 보고토록 하고, 검색 업무를 위탁업체에 위탁운영 시 제출하는 추천서 양식 신설

3. 의견제출

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. 5. 2.까지 국토교통부장관(항공보안정책과, 전화 044-201-4236, 팩스 044-201-562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현 행	개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곳 :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

(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, 우편번호 30103)